

대상	변경전	변경후	비고
현지약관	13.2. 제12.1조의 지급정지 금액은...(이하 생략) 13.3. 제12.1조의 지급정지기간은 지급정지한 날로부터...(이하 생략) 13.4. 은행이 제12.1조의 지급정지를 한 때에는...(이하 생략) 13.8. 이 조의 금융사고자금 지급정지와 관련하여 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12.1조의	13.2. 제13.1조의 지급정지 금액은...(이하 생략) 13.3. 제13.1조의 지급정지기간은 지급정지한 날로부터...(이하 생략) 13.4. 은행이 제13.1조의 지급정지를 한 때에는...(이하 생략) 13.8. 이 조의 금융사고자금 지급정지와 관련하여 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13.1조의	조항 번호 수정
	16.4. 제15.1조 및 제15.2조의 신고는...(이하 생략) 16.5. 제15.1조의 신고를 철회할 때는 고객 본인이 서명으...	16.4. 제16.1조 및 제16.2조의 신고는...(이하 생략) 16.5. 제16.1조의 신고를 철회할 때는 고객 본인이 서명으...	
	17.3. 은행은...(중략)...고객이 제15조에 의한 변경신고를 게을리 하여 도달되지 않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7.3. 은행은...(중략)...고객이 제16조에 의한 변경신고를 게을리 하여 도달되지 않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8.4. 고객이 제15.1조, 15.2조 및 제15.4조의 신고나...(이하 생략)	18.4. 고객이 제16.1조, 16.2조 및 제16.4조의 신고나...(이하 생략)	
	20.2. 은행은 제19.1조의 경우...(이하 생략). 20.3. 제19.1조 및 제19.2조와 관련한 수수료표는 영업점에 놓아두거나 게시합니다.	20.2. 은행은 제20.1조의 경우...(이하 생략). 20.3. 제20.1조 및 제20.2조와 관련한 수수료표는 영업점에 놓아두거나 게시합니다.	
	22.2. 약관변경의 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변경약관 시행일 1개월 전에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알리도록 합니다. ① 제21.1조에 의한 영업점과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이하 생략)	22.2. 약관변경의 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변경약관 시행일 1개월 전에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알리도록 합니다. ① 제22.1조에 의한 영업점과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이하 생략)	
	22.3. 고객은 제21.1조 및 제21.2조의 고지 후	22.3. 고객은 제22.1조 및 제22.2조의 고지 후	